

PLACEONE	등록번호	20130112	홈페이지
	최초등록일	2013.08.12	www.tayokidscafe.co.kr
	최종등록일	2024.01.29	대표이메일 tayokidscafe@tayokidscafe.co.kr

타요 키즈카페 정보 공개서

(주)플레이스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3년 09월 26일

주식회사 플레이스원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4, 3층 (삼평동, (주)아이코닉스)

대표번호 : 031-698-2000

팩스번호 : 031-698-2400

담당부서 : 전략운영팀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7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8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5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29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1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3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34

- * [별첨 1] : 2020년(8기), 2021년(9기), 2022년(10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 [별첨 2] : 가맹금 예치신청서
- * [별첨 3] : 가맹점 관리표 등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플레이스원	타요 키즈카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4, 3층(삼평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3.04.24	2013.05.01	최진식	031)698-2000	031)698-2400
	법인등록번호	110111-5120938	사업자등록번호	206-86-7724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최진식	타요 키즈카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4, 3층(삼평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진식	031-698-2000	031-698-2400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감사)	최진욱	타요 키즈카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4, 3층(삼평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진식	031-698-2000	031-698-2400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이사)	박영준	타요 키즈카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4, 3층(삼평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진식	031-698-2000	031-698-2400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엔컴플러스	고스트캐슬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88 13, 14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진식/최진욱	1688-9253	02-467-2558						
법인등록번호	110111-2695067	사업자등록번호	206-81-77464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뽀로로파크	뽀로로파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4, 3층(삼평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최진식	031-698-2000	031-698-2400						
법인등록번호	110111-4211241	사업자등록번호	214-88-4963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타요 키즈카페]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타요 키즈카페	꼬마버스 타요 캐릭터를 이용한 키즈카페
상 호	타요 키즈카페 00점	
상표(서비스표)	 ©ICONIX / EBS / SEOUL 쥘아이코닉스에 의해 권리가 허가됨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0년	6,892,098	7,346,721	-454,623	1,981,143	-1,765,369	-1,825,319
2021년	8,214,074	8,506,646	-292,572	4,348,313	206,449	162,050
2022년	6,433,490	6,835,781	-402,291	5,590,336	447,102	603,190

그 근거 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별첨 1] : 2020년(8기), 2021년(9기), 2022년(10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최진식	대표이사	2007년~현재	(주)엔컴플러스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2015년~현재	(주)뽀로로파크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박영준	이사	2023~현재	(주)뽀로로파크 이사	이사
	최진옥	감사	2007년~현재	(주)엔컴플러스 이사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2년 12월 31일	3	1	4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엔컴플러스	가맹사업 경영	2003년~현재	고스트캐슬(등록번호: 20080100374)이라는 영업표지의 PC방 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뽀로로파크	가맹사업 경영	2015.01~현재	뽀로로파크(등록번호 : 20150236)이라는 영업표지의 키즈카페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꼬마버스 타요	영업표지 사용대가	2008.11.18. 출원 2009.11.25. 등록	출원번호:41-2008-0029681 등록번호:41-0192-0030000	서울특별시	2029.11.25. (2023.05.05.)

‘꼬마버스 타요’의 사업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주)아이코닉스와 (주)플레이스윈은 『‘꼬마버스 타요 실내 놀이터 및 키즈 카페’ 직접 운영 및 가맹 사업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꼬마버스 타요’의 사업적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주)아이코닉스와 (주)플레이스윈의 계약기간 중에 (주)플레이스윈과 적법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사업자에게는 (주)아이코닉스와 (주)플레이스윈의 계약 종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정하였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타요 키즈카페 가맹사업 현황

1. “타요 키즈카페”를 시작한 날: 2013년 4월 2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5년 01월 07일)

2. “타요 키즈카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플레이스원	타요키즈카페	최종일	2013.4.~20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4, 3층(삼평동)
(주)플레이스원	타요키즈카페	최진식	2013.4.~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4, 3층(삼평동)

3. “타요 키즈카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타요키즈카페	유아관련	실내놀이시설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타요 키즈카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0.12.31			2021.12.31			2022.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3	25	8	28	20	8	25	18	7
서울	3	3	-	2	2	-	1	1	-
부산	2	1	1	2	1	1	1	1	-
대구	2	2	-	2	2	-	2	2	-
인천	2	2	-	1	1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1	1	-	1	1	-	1	1	-
울산	1	1	-	1	1	-	1	1	-
세종	-	-	-	-	-	-	-	-	-
경기	12	8	4	10	6	4	9	5	4
강원	-	-	-	-	-	-	-	-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2	2	-	1	1	-	1	1	-
전북	2	-	2	2	-	2	2	-	2
전남	2	2	-	2	2	-	2	2	-
경북	-	-	-	-	-	-	-	-	-
경남	2	1	1	2	1	1	2	1	1
제주	1	1	-	1	1	-	1	1	-

5. 바로 전 3년간 타요 키즈카페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0	34	-	-	9	-	25
2021	25	-	-	5	-	20
2022	20	-	-	2	-	18

6. 타요 키즈카페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0.12.31	2021.12.31	2022.12.31
계열회사	(주)엔컴플러스	고스트캐슬	20080100374	PC방	0/0	0/0	0/0
가맹본부 대표이사	(주)뽀로로파크	뽀로로파크	20150236	키즈카페	2/8	2/9	2/7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 등의 판매 매출액 추정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2년말 가맹점수	2022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평균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18	271,343	1,814	524,183	3,495	64,495	806	18곳 산출
서울	1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2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1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1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5	307,237	2,118	364,699	2,574	163,796	1,343	5곳
강원	-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2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1	해당없음						5곳 미만

*2022년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 가맹점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POS 확인이 가능한 18곳 점포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

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타요키즈카페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2	18	2,286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광고		(비공개)	18,245	-	-	(비공개)
판촉	(비공개)					

※ 당사에서 [2022년]에 [타요키즈카페] 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기 어려워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의 총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화양동지점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10	02-467-8007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 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가맹본부 등록코드 : 100603

* [별첨 2]: 가맹금 예치신청서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타요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495㎡ 기준 613,500천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가맹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가맹비를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3,000				
Know-how 제공	5,500	계약체결일 익일	점포개설 이전	해당 항목의 제공 및 준비 완료	
개업교육	6,600	계약체결일 익일	교육시작 이전		
개업지원	6,600	계약체결일 익일	점포개설 이전		
운영매뉴얼 등 각종자료 제공	3,300	계약체결일 익일	자료제공 이전		
상권 및 입지조사	11,000	상권 및 입지조사 착수 와 동시	반환 안됨	상권 및 입지조사비용	

* 가맹비는 당사의 경영방침 및 경영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 체결일 익일	상품대금 등의 미지급금	

* 상품대금의 3개월 평균금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평균금액의 150%로 조정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36,000천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합계	36,000
Know-how 제공	5,500
개업교육	6,600
개업지원	6,600
운영매뉴얼 등 각종자료 제공	3,300
상권 및 입지조사	11,0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IV-1-7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면적 495㎡ 기준입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577,500				
공간기획	가맹본부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상기 총계금액에 포함	3.3㎡당 3,850천원	별도 계약서에 명기	별도 계약서에 명기	지역특성 고려한 공간 기획료
인테리어(내부)	가맹본부					
집기비품	가맹본부					
놀이기구	가맹본부					
초도물품	가맹본부					

* 위 표의 금액은 495㎡(150평형) 기준으로 비용이 작성되었으며,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외 미포함 금액은 아래와 습니다.

[아래]

인터랙티브, VR, IOT 등의 놀이기구 / 커피머신, 식기세척기, 노트북,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기기 / 외부간판 등의 외부공사 / 냉난방기, 전기증설, 소방 등의 공사 비용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시공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시공전체를 감리할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도면제공, 감리에 대한 비용으로 1.0㎡당(가맹계약서에 명시한 가맹점 면적 기준) 일금 삼십만원(₩300,000)(부가세별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수 없는조건	비고
감리비	가맹본부	300,000원 /㎡	별도 계약서에 명기된 기한	별도 계약서에 명기된 기한	별도 계약서에 명기된 기한	점포 시설 공사를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지정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급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분석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 검토 후 결정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입점할 점포를 직접 개발한 경우에도 입점할 점포에 대한 상권분석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의 하자 및 결함 등의 검토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의 최종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아동관련 중요 범죄경력이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보건증 발급에 문제가 없는 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상기 턴키(turn key)방식에 포함되는 사항 외 별도로 진행되는 설비, 물품 등은 하기의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가맹'을 참고로 본사와 협의하여 진행됩니다.

8)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가맹계약 체결일 익일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 항목에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상표사용료	가맹본부	월 매출액(VAT포함) 7%	다음 월 10일			계약해지 시 계약이행 보증금에서 차감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월 매출액(VAT포함) 0.5%	다음 월 10일			계약해지 시 계약이행 보증금에서 차감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교육 전 사전 통지	교육시작일 3일전			교육 필요시 지급
POS사용료	가맹본부	월 110/개	다음 월 10일			계약해지 시 계약이행 보증금에서 차감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점사업자분담(가 맹본부 부담 비용 제외한 금액)				VII-1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금전지급채무 발생 시 부담

*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지급해야하는 계속가맹금을 매일 소셜사에서 지급되는 판매액과 상계시키도록 한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귀하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2)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2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타요 키즈카페] 가맹사업은 제3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주된 물류를 공급하는 관계로 귀하가 영

업종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는 없습니다. 이점 양지바랍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항목	내용	시기	비고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각종 시설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정착물을 비롯한 각종 시설 관리 상태 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안전검사	수시	
제품 및 상품 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제품 및 상품의 보관상태, 신선도 유지 상태 등 점검	수시	
가맹본부 운영지침 준수	타사 제품 취급, 운영 메뉴얼의 이행 여부, 교육 훈련 등 점검	수시	

당사는 귀하의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의 점검 및 위반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점포 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 도색, 손상된 기구의 수선, 낡은 간판이나 기타 비품의 교체 등 점포의 외관이나 기구, 비품 등의 보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부분보수 및 전면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할 때는 소정의 교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당사는 즉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양수인, 지식재산권, 계약유지 또는 해지에 관한 선택 여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승인을 요청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위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승인

또는 거절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통지하지 아니하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귀하가 승인을 거절 하여 계약이 해지 될 경우 계약의 중도 합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면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또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는 지식재산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식재산권이 변경된 경우 즉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귀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되기 전의 영업 표지가 부착된 상품과 기타 가맹점의 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은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사용기간이 만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획득(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 포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타요 키즈카페 운영권을 본 계약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인은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고 양수인은 가맹비 33,000천원(부가세 포함)과 계약이행보증금 3,000천원을 가맹본부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가맹본부와 신규로 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과 같습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점포 또는 영업을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동의를 구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위 항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본부가 위 1개월 이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처분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적법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또는 영업을 양수하거나 전차한 제3자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영업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 ①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타요 키즈카페 시스템 및 Know-how 등 타요 키즈카페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간판, 휘장, 로고 등 타요 키즈카페에 관한 일체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7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위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철거 및 원상복구 및 철거의 비용은 본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면적당(가맹계약서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1,000원씩[매장면적(m²) X 지체일수 X 1,0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타요 키즈카페 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양식, POS시스템, 보고서, 서신, 운영과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중단 및 반환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 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세부사항

귀하가 [타요 키즈카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타요 키즈카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 권장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 [타요 키즈카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 1) 당사는 [타요 키즈카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2022년도 아래와 같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사항이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가 [타요 키즈카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 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장료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입장료	가맹점의 협의를 거쳐 본사가 정한 금액	1회 위반: 구두(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계약 해지	

이외 본사 소셜할인 정책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가맹점간 무차별인 할인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각 가맹점은 본사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음식류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돈까스류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계약 해지	가맹본부가 제공한 새로운 메뉴에 한하여 추가가 가능합니다.
커피/음료류			
피자류			
볶음밥류			
구슬아이스크림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로 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허가 없이 소비자 이외의 타인에게 제공·판매·대여 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장료

상품·용역 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입장료	기준가격 어른 : 5,000원 어린이 : 15,000원~17,000원	변동 시 이메일을 통한 통보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류

상품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통보방법	비고
등심 돈까스	8,500	변동 시 개별 통보	가맹본부는 새로운메뉴 제공시가격도 함께제공 합니다.
치즈 등심 돈까스	9,500		
함박스테이크	8,500		
불고기 피자	12,000		
콤비네이션 피자	12,000		
고르곤졸라 썬크러스트 피자	12,000		
크림 스파게티	8,500		
미트 스파게티	8,500		
햄야채볶음밥	6,500		
새우볶음밥	6,500		
닭가슴살볶음밥	6,500		
김치덮밥	7,500		
소고기덮밥	7,500		
오징어덮밥	7,500		
짜장덮밥	7,500		

국물떡볶이	8,500		
짜장떡볶이	8,500		
허니브레드	5,500		
치킨텐더	5,000		
치킨너겟	6,000		
모듬감자튀김	8,000		
존득핫도그	2,000		

※ 음식류에 기재된 권장가격은 귀하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와 사전 협의
를 통하여 판매 가격을 결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
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
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실내 놀이터 및 키즈카페	타요키즈카페	뽀로로파크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해당 가맹점 위치에서 반경 1km 지역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타요키즈카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네이버예약	https://booking.naver.com/	타요키즈카페 이용권 (주중/주말 어린이,어른)	구분 없음
	쿠팡	https://www.coupang.com/np/search?component=&q=%ED%83%80%EC%9A%94%ED%82%A4%EC%A6%88%EC%B9%B4%ED%8E%98&channel=us er		
	위메프	https://search.wemakeprice.com/search?search_cate=top&keyword=%ED%83%80%EC%9A%94%ED%82%A4%EC%A6%88%EC%B9%B4%ED%8E%98&isRec=1&_service=5&_type=3		
	티몬	https://search.tmon.co.kr/search/?keyword=%ED%83%80%EC%9A%94%ED%82%A4%EC%A6%88%EC%B9%B4%ED%8E%98&thr=hs		
	옥션	http://browse.auction.co.kr/search?keyword=%ED%83%80%EC%9A%94%ED%82%A4%EC%A6%88%EC%B9%B4%ED%8E%98&itemno=&nickname=&frm=hometab&dom=auCTION&isSuggestion=No&retry=&Fwk=%ED%83%80%EC%9A%94%ED%82%A4%EC%A6%88%EC%B9%B4%ED%8E%98&acode=SRP_SU_0100&arraycategory=&encKeyword=%ED%83%80%EC%9A%94%ED%82%A4%EC%A6%88%EC%B9%B4%ED%8E%98		
	지마켓	https://browse.gmarket.co.kr/search?keyword=%ED%83%80%EC%9A%94%ED%82%A4%EC%A6%88%EC%B9%B4%ED%8E%98		
	신세계몰	https://www.ssg.com/search.ssg?target=all&query=%ED%83%80%EC%9A%94%ED%82%A4%EC%A6%88%EC%B9%B4%ED%8E%98		
	웅진씽크빅	https://nolbal.com/search?tab=activity&keyword=%ED%83%80%EC%9A%94%ED%82%A4%EC%A6%88%EC%B9%B4%ED%8E%98		
	야놀자	https://leisure-web.yanolja.com/leisure/10016658		
	여기어때	https://www.goodchoice.kr/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천원)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2	73%	27%	-	-
	4,947,350	1,790,141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2	0%	0%

*당사는 온/오프라인 동일 상품(티켓)을 판매 중에 있으며, 각 채널만의 "전용상품"의 개념은 없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타요 키즈카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로열티, 공사비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6조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6조 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6조 1항
○ 타요 키즈카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6조 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6조 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23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상 제16조, 제18조[최초가맹금, 계속가맹금] 등 금전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37조 1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 상 제20조[교육 및 훈련]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3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상 제22조[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시정요구권] 각 항에 의거한 가맹본부의 시정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37조 1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 상 제34조[영업양도 및 담보제공]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37조 1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 상 제26조[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37조 1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 상 제27조[지도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37조 1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 상 제29조[상품·자재 등 공급의 중단]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7조 1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 상 제39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37조 1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서 상 제25조[광고 및 판촉]에 의해 약정된 광고나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7조 1항
○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37조 1항
○ 기타 가맹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7조 1항
○ 가맹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POS의 구입 및 사용을 거부한 경우	37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 탈법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브랜드가치 침해 내지 다른 가맹점과 당사에 유무형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	37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상 제37조 1항 14호에 정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7조 1항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7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7조 2항
○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위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제3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	37조 2항

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7조 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관련 계약 조문의 제37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1개월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수인,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가맹본부와 양수인의 신규 가맹계약 체결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

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잔여기간 동안 계약 인정되며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서면으로 승인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급박한 사정일 때 사후 승인 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는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상호 등을 도용하여 제3의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키즈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업종	당사는 계약기간 중 경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타요 키즈카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본부와 협의 조정 가능	주 5일 이상 월22일 이상 개점하여야 한다.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 금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2명 이상의 사람이 근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사는 귀하의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의 점검 및 위반 사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검에는 점포의 외관관리, 지적재산권의 관리, 회계처리, 각종 설비관리, 상품관리, 위생검사, 운영규정 준수, 기타 근무내용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의거한 안전검사 등에 대한 점검이 포함됩니다.

둘째, 당사는 귀하의 점포 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 도색, 손상된 기구의 수선, 낡은 간판이나 기타 비품의 교체 등 점포 외관이나 기구, 비품 등의 보수 교체가 필요할 경우 부분보수 및 전면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귀하는 아래 가맹점관리표, 안전점검실시대장, 일일안전점검대장, 어린이놀이시설사고보고서, 놀이기구 관리대장을 매장에 비치하여 작성하고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가맹계약갱신거절(종료), 계약(즉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관리표 : 가맹본부 직원의 방문시 작성
- 안전점검실시대장 : 월 1회 작성하여 가맹본부에 보고

- 일일안전점검대장 : 매일(운영일 기준) 작성하여 월 1회 가맹본부에 보고
- 어린이놀이시설사고보고서 : 사고발생시 마다 시군구 또는 지역교육청 재난관리 부서와 가맹본부에 보고
- 놀이기구관리대장 : 수리 등의 변동사항시 작성하여 가맹본부에 보고

[별첨 3] 양식 기재

<주요 관리 내용>

1.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2004년 12월 9일 이후 설치 매장부터 안전검사(인증) 시행합니다.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2008년 1월 27일 이후 설치 매장부터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인증 및 설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 주체(가맹점사업자)는 유지 관리의 의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해야 합니다.
 - 1) 정기 시설 검사 : 2년에 1회
 - 2)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 3) 필요 시 안전진단 신청
 - 4) 안전교육 : 2년에 1회
 - 5) 보험가입 : 사망 시 최고 8,000만원 이상 보상 가입
 - 6)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와 귀하의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의 광고 또는 판촉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분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 광고	가맹점부담 초과 금액	월 매출액 (VAT포함) 0.5%	매월 10일 전월 매출액의 0.5%를 가맹본부에 지급→ 가맹본부 계획에 따라 광고 진행	대중매체광고, 전국단위 또는 지역단위 광고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계획 공고→가맹점 부 담액 제시→가맹점 행사참 여결정→행사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관측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판매증진을 위하여 “가맹점별 개별 관측촉진 및 광고활동”을 할 경우, 그 횟수, 시기, 방법,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시한 요건 및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비용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별 개별 판매촉진 및 광고활동”을 위한 팜플렛, 전단, 리플렛, 카탈로그 기타 관측물을 제작할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대표전화와 팩스번호, 홈페이지주소, 이메일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기간 중)의 평균 월매출액 x 2개월분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귀하가 계약의 일반해지 사유 또는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당사와 “타요 키즈카페” 타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과거 1년간(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영업기간 중)의 평균 월매출액 x 2개월분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귀하가 계약종료 후 당사의 영업표지를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일의 익일(귀하에게 소진기간을 준 경우에는 소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면적당(가맹계약서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1,000원 씩[매장면적(m²) X 지체일수 X 1,000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7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70일 내외	IV-1 참조
가맹점희망자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70	없음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69~67	없음
상권 및 입지조사 실시	- 상권 조사 - 입지 주위 점포 입지 조사	D-67~62	IV-1 참조
최종 협의	- 개설승인	D-62~56	없음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55~53	없음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52	II-9 참조 IV-1 참조
점포실측/설계	- 점포 인테리어 실측 - 견적 산출	D-51~46	IV-1 참조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6~44	IV-1 참조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D-44~3	IV-1 참조
인·허가 및 교육 실시	- 인·허가 신청 및 사업자 등록 - 점포운영교육 실시	D-8~1	IV-1 참조
점포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p>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p>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p> <p><분할지급시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p>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CRM	고객 유입 DM 발송	없음 (전 가맹점에 해당)	수시	소요되는비용 전액 가맹점 부담	매장이용료 할인 등
소셜커머스 마케팅	온라인 티켓 판매	없음 (전 가맹점에 해당)	수시	소요되는비용 전액 가맹점 부담	매장이용료 할인 등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

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4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경영지원 팀 (02-462-3502)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타요 키즈카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
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교육	- 매장운영 및 관리 - 회계 및 POS 시스템 교육 - 서비스, 입장규정, 이벤트 교육 - 놀이시설 운영 및 안전 교육 - 매장 정리정돈 및 물품 입고 교육 - 마케팅 교육 - 직원채용 및 관리 요령 - 주방교육(조리 및 위생관리)	실습교육	개업일 이전 ~개업일 이후 7일 이내	필수교육
보수교육	- 신규교육 내용과 같은	실습교육	가맹본부지정	가맹본부 필요여부에 따라 결정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타요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천원,부가세포함)	비고
신규교육	약7일	11,000(가맹금내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교육	1일(3~4시간)	165	가맹본부 필요여부에 따라 결정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가 개업교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개설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서상의 명시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홈플러스 북수원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30 홈플러스 4층
2	경기	홈플러스 안산고잔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5 홈플러스 3층
3	경기	롯데마트 일산주점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6 문촌마을 1층 (주점동 15 1층)
4	경기	홈플러스 진접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447
5	경남	홈플러스 창원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15, 4층(팔용동, 삼성홈플러스)
6	전북	세이백화점 서전주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54, 3층(효자동3가, 백화점 세이 서전주점)
7	전북	홈플러스 익산점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35, 4층(영등동 831-1, 홈플러스 익산점)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2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년 6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2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55,734	당사의 포스 매출 및 각 지점의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을 통해 매출 증빙.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사(031-698-240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 1] : 2020년(8기) 2021년(9기) 2022년(10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별첨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가맹금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 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 3] 가맹점 관리표 등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용)

본인은 _____(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1)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3)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범위반 사실 4)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 가맹점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7)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2. 수령자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명: (인)

3. 제공자

가맹본부명:

제공자명:

(인) 제공일: 20 년 월 일

------(인)-----절취선------(인)-----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용)

본인은 _____(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1)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3)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범위반 사실 4)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 가맹점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7)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2. 수령자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명: (인)

3. 제공자

가맹본부명:

제공자명:

(인) 제공일: 20 년 월 일